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333
----------	-------

발의연월일 : 2025. 7. 8.

발 의 자 : 박희승 · 한정애 · 김종민
서영교 · 이성윤 · 위성곤
정준호 · 박용갑 · 맹성규
박홍배 · 박상혁 · 김한규
한민수 · 김영호 · 박민규
의원(15인)

제안이유

「민사소송법」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민사소송규칙에서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를 규정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상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 온라인 게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등 엄격한 서면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소제기 등에 있어 전자문서나 전자매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입법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형사 공시송달도 민사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전자통신매체의

발달에 부응하여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외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송달을 가능하게 하여 실효성과 경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재판서의 내용 중 일부 범죄사실 또는 공소사실을 정보저장매체등으로 재판서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서 송달 시 정보저장매체의 등본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8조제2항 신설 및 제42조).
- 나. 공시송달 방식에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공시를 포함함(안 제64조).
- 다. 공소장의 내용 중 일부 공소사실을 정보저장매체등으로 공소장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장부분 송달 시 정보저장매체의 등본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54조 및 제266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의 재판서의 내용 중 일부 범죄사실 또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에 저장하여 재판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42조 본문 중 “裁判書謄本”을 “재판서등본(재판서에 정보저장매체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등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4조제2항 중 “法院揭示場에 公示하여야”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로 한다.

제254조제2항 중 “副本”을 “부본(공소장에 정보저장매체등이 포함된 경우 그 정보저장매체등의 등본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하여 공소장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266조 본문 중 “副本”을 “부분(공소장에 정보저장매체등이 포함된 경우 그 정보저장매체등의 등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38條(裁判書의 方式) (생 략) <u><신 설></u>	第38條(裁判書의 方式)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의 재판서의 내용 중 일부 범죄사실 또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에 저장하여 재판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第42條(裁判의 宣告, 告知의 方式) 裁判의 宣告 또는 告知는 公判廷에서는 裁判書에 依하여야 하고 其他의 境遇에는 裁判書謄本의 送達 또는 다른 適當한 方法으로 하여야 한다. 但, 法律에 다른 規定이 있는 때에는 例外로 한다.	第42條(裁判의 宣告, 告知의 方式) ----- ----- -----재판서등본(재판서에 정보저장매체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등본을 포함한다)----- -----.
第64條(公示送達의 方式) ① (생 략) ② 公示送達은 법원사무관등이 送達할 書類를 保管하고 그 事	第64條(公示送達의 方式) ① (현행과 같음) ② ----- -----

由를 <u>法院揭示場에</u> <u>公示하여야 한다.</u> ③・④(생략) 第254條(公訴提起의方式과公訴狀) ①(생략) ② 公訴狀에는被告人數에相應한<u>副本을添附하여야한다.</u> ③(생략) ④ 公訴事實의記載는犯罪の時日，場所와方法을明示하여事實을特定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단서신설> ⑤(생략) 第266條(公訴狀副本의送達) 法院은公訴의提起가있는때에는遲滯없이公訴狀의<u>副本을被告인또는辯護人에게送達하여야한다.</u>但,第1回公判期日	-----<u>법원게시장에공시하거나전자통신매체를이용하여공시하여야-----.</u> ③・④(현행과같음) 第254條(公訴提起의方式과公訴狀) ①(현행과같음) ② ----- ----<u>부분(공소장에정보저장매체등이포함된경우그정보저장매체등의등본을포함한다)--</u> -----. ③(현행과같음) ④ ----- ----- -----. <u>다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공소장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u> ⑤(현행과 같음) 第266條(公訴狀副本의 送達) ---- ----- -----부분(공소장에 정보저장매체등이 포함된 경우 그 정보저장매체등의 등본을 포함
---	--

前 5日까지 送達하여야 한다.

한다)-----.
-----.